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(제31조 관련)

계급별	경과	해양	수사	항공		정보통신		특임		
	분야	해양	수사	조종	정비	전산	통신	구조	특공	구급
총경 · 경정	필수	형법, 국제법		행정법, 항공법규, 비행이론		행정법, 형법, 전기통신				
	선택	항해학, 기관학, 형사소송법, 경제원론 중 1과목		항공역학, 항공기상학 중 1과목		전산학개론, 유선공학, 무선공학 중 1과목				
경감 · 경위	필수	행정법, 형법, 국제법	행정법, 형법, 국제법	행정법, 항공법규, 비행이론		행정법, 형법, 전기통신				
	선택	항해학, 기관학, 형사소송법, 경제원론 중 1과목	항해학, 기관학, 형사소송법, 경제원론 중 1과목	항공역학, 항공기상학 중 1과목		전산학개론, 유선공학, 무선공학 중 1과목				
경사 · 경장 · 순경	필수	해양경찰 학개론, 해사영어, 해사법규	해양경찰 학개론, 형법, 형사소송법		항공법규, 항공기기체, 항공기엔진	컴퓨터일반, 네트워크보안, 정보보호론	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, 무선공학개론	해양경찰 학개론, 잠수이론	해양경찰 학개론, 잠수이론	해양경찰학 개론, 응급구조실 무
	선택	항해학, 기관학 중 1과목								

비고

1. 항공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"항공법규"는 「공항시설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항공안전법」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.
2. 해양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"해사영어"는 출제 범위에서 해상운송, 해상보험 및 기관학 분야를 제외한다.
3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사 이하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은 해사영어·해양경찰학개론 및 형사법(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수사·증거 분야를 출제범위로 한다)으로 하고, 선택과목은 항해학 또는 기관학 중 1과목으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은 해사영어·해사법규로 하고, 선택과목은 항해학 또는 기관학 중 1과목으로 한다.